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87
----------	-------

발의연월일 : 2025. 7. 28.

발 의 자 : 정진욱 · 김 윤 · 안도걸
정준호 · 오세희 · 이개호
조계원 · 박균택 · 박지원
이재관 · 최혁진 · 조인철
양부남 · 신정훈 · 장철민
박용갑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중동, 중국 등에서의 세계적인 설비 증설에 따른 인해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석유화학기업은 범용품 중심의 성장전략에서 탈피하기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라 함)을 활용해 설비 폐쇄 및 운영 효율화, 합병,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등 자발적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현행 기업활력법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달성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상의 기업결합을 행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만 제출할 수 있을 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별도 심사를 다시 받도록

정하고 있음. 심지어 사업재편계획에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인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 심의 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사실상 특례 규정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구조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기업결합과 공동행위가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및 공동행위 인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다만,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는 주무부처의 장이 그에 포함된 기업결합 승인 및 부당 공동행위 인가 요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및 고려하도록 하여 기존 규제 권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였음(안 제10조제8항 및 제24조의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주무부처의 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40조에 따른 기업결합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의 효율성 증대효과, 같은 법 제40조제2항제1호의 산업구조조정 효과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기업결합 및 공동행위 인가에 관한 특례) 주무부처의 장이 제10조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40조에 따른 기업결합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말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다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결합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① ~ ⑦ (생략)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기업 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율성 증대 효과 등을 판단할 때 주무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⑧ 주무부처의 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40조에 따른 기업 결합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의 효율성 증대효과, 같은 법 제40조제2항제1호의 산업구조 조정 효과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 ⑪ (생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제24조의2(기업결합 및 공동행위

<u>병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 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u>	<u>인가에 관한 특례) 주무부처의 장이 제10조에 따라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40조에 따른 기업 결합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사업재편계획 을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적 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말 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40 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u>
---	---